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역할을 각각 공소제기·유지와 수사로 구분하는 한편,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 협력·통제 및 사건처리 절차를 재정비하는 취지의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과 수사의 신속성·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사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등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 강화(안 제7조, 제7조의2, 제8조의2, 제8조의3)

- 1) 금융·기술유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을 중요사건에 추가하고, 공소시효 임박 사건은 송치 전 협력을 의무화함
- 2)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관련된 의견을 검사에게 요청하고, 검사는 신속히 의견을 회신하도록 절차를 마련함
- 3) 중대사건에 대한 합동대응 및 공소유지를 위한 사법경찰관의 지원

절차를 마련함

나.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수사를 보조하도록 직무수행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0조 제4항)

다.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 실효성 강화(안 제60조,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1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3 등)

- 1) 검사 보완수사요구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1개월 내 보완수사를 이행한 후 결과통보 전 종합수사결과·기록을 송부하고, 검사는 7일 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 2) 보완수사 이행관리와 직무배제·징계요구, 상급·다른 수사기관 지정 등 실효성 확보 절차를 구체화함
- 3) 재수사요구 기한의 예외사유를 확대하고, 재수사요구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상급·다른 수사기관 지정 절차를 구체화함

라. 사실관계 확인 등 절차 구체화(안 29조의2, 제65조의3)

- 1) 사건관계인·전문가·사법경찰관의 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등 사실관계 확인의 방법·절차를 규정함
- 2)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의 방법과 사법경찰관의 호송 등 협조절차를 규정함

마. 사건관계인 권리보호 강화(안 제26조의2, 제38조의2, 제47조 등)

- 1) 피의자신문 등 녹음과 압수·수색·검증 과정의 영상녹화 방법·절차를 구체화함
- 2) 고소인등에게 검사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안내 방법

및 예외사유를 규정함

3)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일정한 고발인에게 불송치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대상 범위와 통지 절차를 구체화함
바. 검사의 수사요청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관련 범죄 통보에 따른 사건 수리·처리 및 결과통보 절차를 마련함(안 제65조의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형사소송법」 제195조”를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로, “수사과정에서 국민”을 “국민”으로, “효율성”을 “공정성·효율성”으로 한다.

제2조 중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방법”을 “방법 및 피해자의 권리보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수사의 전(全) 과정에서 피의자”를 “피의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수사기관(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없으면”을 “없으면 신속하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금융·증권, 공정거래, 기술유출 등 전문적인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

4.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와 관련된 사건

5. 선박충돌, 불법조업, 마약류 수출입, 밀항·밀입국 등 범죄가 국제
항해선박과 관련된 사건

6. 다음 각 목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관련 사건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
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
킹범죄

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사.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공소시효 만료일이 6개월 이내인 사건

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제1항 전단에 규정된 사항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해야 하고,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 이내에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해야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중대사건에 대한 합동대응) ① 국가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 여러 수사기관이 공동으로 수사하고 검사와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공소청과 관계 수사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합동대응할 사건(이하 “합동대응 사건”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합동대응 사건이 지정된 경우 수사기관 간에 협의하여 합동수사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수사단이 설치된 수사기관의 장은 관계 수사기관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이에 관련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합동대응 사건에 대한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④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합동수사단과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전담검사 또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⑤ 합동수사단이 설치된 수사기관의 장은 합동수사단의 구성, 파견내

역, 분기별 사건처리 현황 및 최종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중요사건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거나 제시·교환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는”으로, “검찰청”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으로, “경찰관서”를 “수사관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공소유지를 위한 협력)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공판기일에 재정(在廷)하여 검사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3(사법경찰관의 의견요청 절차 등)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관련하여 법 제195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 및 필요한 관계 서류·자료와 그 목록을 검사에게 함께 송부해야 한다.

1.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2. 의견요청의 요지 및 쟁점
3. 사법경찰관의 검토의견 및 그 이유

② 검사는 의견 제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요청내용을 명확히 하도록 하거나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송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사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시한 의견 및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기록에 편철하고,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할 때 법 제195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 의견을 요청한 사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수사기관협의회)”를 “(형사사법기관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검찰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간에 수사”를 “공소청 및 수사기관 간에 형사사법절차”로, “수사기관 간”을 “기관 간”으로 하며, 같은 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수사기관협의회”를 각각 “형사사법기관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수사기관협의회”를 “형사사법기관협의회”로, “수사기관협의회에서”를 “형사사법기관협의회에서”로 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를 “사법경찰관리”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15조를 제4조의2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서로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청구 또는 신청”을 각각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0조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청구 또는 신청”을 “신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수사기관의 장”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3장제3절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피의자진술 등의 영상녹화 및 녹음)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44조의2에 따른 영상녹화 또는 법 제244조의6에 따라 녹음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도중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조사를 중단하고,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시작한 후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피의자에게 영상녹화 또는 녹음사실을 고지한 시각과 방법
2. 영상녹화 또는 녹음의 시작 및 종료시각
3.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중단하거나 재개한 경우 그 사유와 중단·재개 시각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44조의6에 따라 녹음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기록하여야 한다.

1. 법 제244조의6제1항 또는 제2항 중 녹음의 근거가 된 규정
2. 법 제244조의6제2항에 따른 녹음의 경우 요청한 사람과 요청 시각

④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법 제244조의6제2항에 따른 녹음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를 “수사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① 검사는 법 제201조제7

항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하기 위하여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화상·전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면담을 위해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체포된 피의자의 호송 등 면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의 호송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담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검사는 구속 사유 등 심사에 필요한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피의자 면담 일시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화상, 전화, 서면 등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검사가 법 제201조제8항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청구하거나 신청”을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보고하고, 그 보고서”를 “통보하고, 그 통보서”로 한다.

제3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압수·수색·검증과정의 영상녹화) ①사법경찰관은 법 제220조의2에 따라 압수·수색·검증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녹화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장 제시 및 촬영고지, 영장사본 교부
2. 압수·수색·검증의 개시 및 진행 과정
3. 압수물의 발견·확인 및 압수과정
4. 압수물의 정리 및 압수목록의 교부 등 압수절차의 완료
5. 압수·수색·검증의 집행종료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는 압수·수색·검증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영상녹화를 중단하거나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중단 및 재개 시각이 영상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영상녹화의 예외사유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된다.

1.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2. 제41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정보저장매체등의 복제본 및 원본을 반출한 뒤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3.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피의자의 도주 등 현장의 급박한 상황으로 즉시 집행이 필요한 경우
4. 증거의 멸실·훼손 또는 은닉 등의 긴급한 사정으로 즉시 집행이 필요한 경우
5. 영상녹화장비의 고장, 통신장애 등 기술적 사유로 영상녹화를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준하여 영상녹화가 현저히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40조 본문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42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전요청을 한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거나, 긴급보전요청을 하거나 보전요청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을 “보전요청을 신청하거나 긴급보전요청을 한 사법경찰관”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를

“검사는 그 내용을 긴급보전요청을 하거나 보전요청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압수물의 처분)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18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압수물에 대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요청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적은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로 해야 한다.

③ 검사는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검사가 제시한 의견과 다르게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적은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로 다시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⑤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검사가 제시한 의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에 기재하여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법 제219조에 따라 수사 과정에 준용되는 법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압수물의 처분에도 준

용한다.

제45조제3항 전단 중 “10일”을 “15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건송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을 “사건송치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사건송치를”을 “사건송치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것을”로, “송치해야”를 “송치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송부해야 한다”를 “송부해야 하고,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송치기한”을 “송치 또는 이송기한”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송치기한”을 “기한”으로, “송치해야”를 “송치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해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을 “각급 공소청의 장”으로, “경찰관서의 장(이하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을 “수사기관의 장(이하 “소속 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요구를 통보받은 소속 수사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등 요구 여부를 징계를 요구한 각급 공소청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징계처분등 최종 처리결과와 그 이유도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47조의 제목 “(구제신청 고지의 확인)”을 “(구제신청의 고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법 제197조의3 제9항에서 정한 고소인등에게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안내 확인서에 상대방의 서명을 받아 사건 기록에 편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우편,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안내하고 그 안내한 일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사건 기록에 첨부할 수 있다.

③ 법 제197조의3제9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고소인등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 안내의 예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1. 고소인등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2. 고소인등의 소재가 불명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고소인등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고소인등이 신청 절차의 안내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안내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고소인등에게 신청 절차를 안내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소청송치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사건이 사실임 계속 중인 사건과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관계에 있거나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명시하여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송치받거나 직접 수사한”을 “송치받은”으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수사 결과의 통지)”를 “(수사 및 사건 처분 결과의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제51조제1항제5호 또는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이송(법 제256조에 따른 송치는 제외한다) 결정을 한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를 “제5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로서 사법경찰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불송치 통지서로 통지해”를 “같은 조에 따른 통지를 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법무부장관 또는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6 후단에 따라 불송치 등의 결정서를 보내기에 앞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조치의 범위는 고소인등의 이의신청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2. 통지를 받을 고소인등이 고소·고발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범죄사실과 관계없는 다른 범죄사실 또는 다른 고소인등에 관한 정보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245조의6 후단에 따라 고소인등에게 송부하는 불송치 등의 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사건관계인의 법률적·사실적 주장에 대한 판단 근거 등 불송치의 취지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5조의7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해당 범죄행위의 상대방이 고발한 「형법」 제2편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제128조(선거방해)의 죄, 「형법」 제2편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중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144조(특수공무방해)의 죄
2.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고발한 「형법」 제2편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제123조의2(법왜곡), 제126조(피의사실공표),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의 죄, 「형법」 제2편 제11장 무고의 죄

3.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고발한 「형법」 제2편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중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제154조(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의 죄

4. 해당 문서 등의 명의자, 해당 문서 등이 제출된 소송의 당사자 또는 해당 문서 등의 행사 행위의 상대방이 고발한 형법 제2편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5. 그 밖에 국가적 또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고발인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범죄

제54조제1항 중 “상급경찰관서”를 “상급 수사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수사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법 제245조의11에 따른 이의제기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55조의 제목 “(소재수사에 관한 협력 등)”을 “(소재확인에 관한 협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245조의5제1호 또는 법 제245조의7제2항”을 “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법 제245조의7제4항”으로, “피의자나 참고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에게 소재수사를”을 “사건을 송치한 수사관서의 사법경찰관에게 소재확인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51조제1항제4호”를 “제51조제1항제4호”로, “즉시 수사를 진행해야”를 “검사는 사건을 재기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즉시 수사를 진행하

여야”로 한다.

제57조 중 “판결문을”을 “판결서를”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범위를”을 “범위, 장기 및 단기 공소시효 만료일을”로, “기록목록”을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상녹화한”을 “영상녹화 또는 녹음한”으로, “영상녹화물을”을 “영상녹화물 또는 녹음물을”로, “영상녹화물의”를 “영상녹화물 또는 녹음물의”로 한다.

제5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를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 제8조에 따른 잠정조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8조의3에 따른 임시조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 그 밖의 법령에서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각종 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를 “여부 결정에 관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검사는 제4항에 따라 영장을 청구하면서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51조제1항제3호”를 “법 제197조의2제5항에 따른 검사의 의견 제시 절차를 거친 다음 제51조제1항제3호”로, “수사중지할 수 있다”를 “수사중지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법 제197조의2제6항에 따른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사법경찰관이 제4항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보완수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의 사유와 필요한 연장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사법경찰관이 법 제197조의2제4항에 따라 검사에게 이행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종합수사 결과를 포함한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고,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종합수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피의자 인적사항

2.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자료

3. 기존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

4. 기존 수사결과와 증거관계

5. 보완수사의 진행 내용

6. 보완수사에 따라 범죄사실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범죄사실 및 적용
법조

7. 보완수사에 따라 혐의 여부에 대한 판단 등 수사결과가 변경된 경우
그 취지와 이유

8. 보완수사결과와 증거관계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보완수사요구 이행 기간의 관리)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 기간(제60조제4항에 따라 보완수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사법경찰관에게 고지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경우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제2항에 따른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수사 기간 내에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없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④ 제60조의3제5항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보완수사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제60조의3(이행 결과 통보 전 절차) ①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려는 경우 미리 제60조제7항의 종합수사 결과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제1항의 송부를 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송부가 있는 경우에 보완수사요구 이행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견을 제시하고 법 제197조의2제6항에 따른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검사가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제4항에 따라 검사가 의견을 제시한 날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검사가 제3항에 따라 추가적인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⑦ 사법경찰관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

다. 검사는 위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사법경찰관에게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61조제1항 중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법 제197조의2제3항”을 “각급 공소청의 장은 법 제197조의2제7항”으로,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장”을 “권한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찰관서장”을 “권한 있는 사람”으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없는 한”으로, “배제해야”를 “배제하고, 1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직무배제를 요구한 각급 공소청의 장에게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의 징계 요구를 통보받은 권한 있는 사람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등 요구 여부를 징계를 요구한 각급 공소청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징계처분등 최종 처리결과와 그 이유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4장제2절에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상급 수사관서 등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의 절차) ①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법 제197조의2제8항에 따라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해당 수사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제1항의 보완수사요구에 앞서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나 그 상급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의 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장제3절의 제목 “사건불송치와 재수사요청”을 “사건불송치와 재수사 요구”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법 제245조의5제2호”를 “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로, “기록목록”을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상녹화물”을 “영상녹화물 또는 녹음물”로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재수사요구의 절차) 검사는 법 제245조의8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해당 사건에 관하여 영향을 주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증거 등의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3. 법 제245조의5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이 송부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된 경우
4. 해당 사건의 수사에 관여한 사람이 직무에 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5. 해당 사건의 수사에 관여한 사람에게 제11조의 회피 사유가 있었음이 확인된 경우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5조의8제2항”을 “법 제245조의8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45조의5제1호”를 “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 재수사로 수집한 증거와 법리, 그에 대한 종합적 판단 등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이유를 적은 재수사결과서를 검사에게 통보하고,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

② 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필요한 경우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사법경찰관의 재수사 기간 및 결과 통보 등은 제1항에 따른다.

제64조제3항(종전의 제2항) 제2호 본문 중 “요청한”을 “요구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197조의3에 따라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4조제4항 중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제3항)”을 “제1항제2호”로, “서류와 증거물의 송부를 요청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를 “서류 및”으

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으로 한다.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방법과 절차) ① 각급 공소청의 장은 법 제245조의8제8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수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직무배제 요구를 통보받은 소속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1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직무배제를 요구한 각급 공소청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징계요구를 통보받은 소속 수사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등 요구 여부를 징계를 요구한 각급 공소청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징계처분등 최종 처리결과와 그 이유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64조의3(상급 수사관서등에 대한 재수사요구의 절차) ① 각급 공소청의 장이 법 제245조의8제9항에 따라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재수사를 요구할 때에는 법 제245조의5제2항에 따른 자료,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해당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으로 송부한다.

② 각급 공소청의 장은 제1항의 재수사요구에 앞서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나 그 상급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재수사요구가 있는 경우 각급 공소청의 장은 사건을 송부하였던 수사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수사관서의 장은 재수사요구를 받은 기관으로 해당 사건을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제65조 중 “제245조의8제2항”을 “제245조의8”로, “제245조의7제1항”을 “제245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으로,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제4장제4절(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검사의 수사요청 및 사실관계 확인

제65조의2(검사의 수사요청 등)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9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수사요청을 수리하고 입건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의 수사요청을 수리한 날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할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통보받은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아 수리한 날부터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3개월 이내에 범죄의 혐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5조의3(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검사의 의견 청취 절차)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13제1항(법 제197조의3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화상·전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② 검사는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공소청 소속 직원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④ 법 제245조의13제5항에 따라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6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 법 제260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소속 검사는 즉시 사법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68조 중 “제12조에 따라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거나 제53조에 따라

수사 결과를 통지”를 “제12조 또는 제53조에 따라 통지”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검사”를 “검사가 검토 중인 사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소인등이 법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을 위하여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245조의12에 따른다.

제7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를 “사법경찰관리”로 한다.

① 검사는 「공소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장제6절(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삭제규정: 2027년 2월 5일
2. 제26조의2, 제38조의2, 제58조제2항 및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 20

27년 8월 5일

제2조(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가 송치받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사 중인 사건으로서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필요한 수사가 불가피한 사건(이하 “계속 수사사건”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한다.

1.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사건
2. 사건 송치 이후 검사가 체포·구속영장 또는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을 청구한 사건
3. 피의자 또는 범죄사실이 상호 관련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서, 그 일부만을 보완수사요구하거나 이송할 경우 통일적인 사건의 처리가 곤란하게 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건의 성질, 수사의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검사의 수사가 계속 필요한 사건

② 계속 수사사건에 관하여는 「공소청법」 시행 전의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형사소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
			-----	-----
			-----	국민-----
			-----	-----
			-----	공정성 · 효율성-----
			-----	-----
제2조(적용 범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관계, 일반적인 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 범위)	-----	사법경찰관(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법 및 피해자의 권리보장-----
			-----	-----
제3조(수사의 기본원칙)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 · 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3조(수사의 기본원칙) ①	사법경찰관-----	-----
			-----	-----
			-----	-----
			-----	-----
			-----	-----
			-----	-----
			-----	-----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예단(豫斷)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②	사법경찰관-----	-----
			-----	-----
			-----	-----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

1. ~ 3. (생략)

④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5조(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① (생략)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의 전(全)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사건 공개에 관한 준칙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중요사건 협력절차) ① 검

-----.

③ 사법경찰관-----

-----.

1. ~ 3. (현행과 같음)

④ 사법경찰관-----

-----.

제5조(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피의자-----

-----.

③ -----
---- 수사기관(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

제7조(중요사건 협력절차) ① ---

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하 “중요사건”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 -----

----- 없으면 신속하

게 -----.

3. ~ 5.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따른 공소시효가 적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
상 성범죄

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
죄

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
죄

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

사.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관
련범죄

7. ~ 9. (현행 제3호부터 제5호
까지와 같음)

② -----
----- 공소시효 만료일
의 6개월 이내인 사건에 대하여

용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
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규정된
사항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해야 한다. 다만, 공
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 이내에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
이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해야
한다.

1. ~ 11. (생 략)

<신 설>

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 다만, 검사와 사법경찰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사건
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일 3
개월 전까지 제1항 전단에 규정
된 사항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
을 제시·교환해야 하고, 공소
시효 만료일 전 3개월 이내에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
이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해야
한다.

1. ~ 11.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중대사건에 대한 합동대
응) ① 국가적·사회적으로 중
대한 사건에 대하여 여러 수사
기관이 공동으로 수사하고 검사
와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공소
청과 관계 수사기관이 상호 협
의하여 합동대응할 사건(이하
“합동대응 사건”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u>② 제1항에 따라 합동대응 사건이 지정된 경우 수사기관 간에 협의하여 합동수사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수사단이 설치된 수사기관의 장은 관계 수사기관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이에 관련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u> <u>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합동대응 사건에 대한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u> <u>④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합동수사단과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전담검사 또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u> <u>⑤ 합동수사단이 설치된 수사기관의 장은 합동수사단의 구성, 파견내역, 분기별 사건처리 현황 및 최종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제8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	제8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② ----- ----- ---- 중요사건에 관하여 상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과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의 장의 협의에 따른다.

1. 중요사건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거나 제시·교환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2.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3. 법 제197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계속 수사할 수 있는지 여부나 사법경찰관이 계속 수사할 수 있는 경우 수사를 계속할 주체 또는 사건의 이송 여부 등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4. 법 제245조의8제2항에 따른 재수사의 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시·교환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거나 제시·교환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는 ---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 수사관서-----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신 설>

<신 설>

제8조의2(공소유지를 위한 협력)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공판기일에 재정(在廷)하여 검사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3(사법경찰관의 의견요청

절차 등)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 와 관련하여 법 제195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 및 필요한 관계 서류·자료와 그 목록을 검사에게 함께 송부해야 한다.

1.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2. 의견요청의 요지 및 쟁점
3. 사법경찰관의 검토의견 및 그 이유

② 검사는 의견 제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요청내용을 명확히 하도록 하거나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

제9조(수사기관협의회) ① 대검찰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간에 수사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수사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로 의견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수사기관협의회를 둔다.

② 수사기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조정한다.

1. 2. (생략)
3. 그 밖에 제1항의 어느 한 기관이 수사기관협의회 협의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구

을 송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사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시한 의견 및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기록에 편철하고,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할 때 법 제195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 의견을 요청한 사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형사사법기관협의회) ① 공소청 및 수사기관 간에 형사사법절차-----기관 간-----형사사법기관협의회--.

② 형사사법기관협의회-----.

1. 2. (현행과 같음)
3. -----형사사법기관협의회-----

한 사항

③ 수사기관협의회는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제1항의 어느 한 기관이 요청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각 기관은 수사기관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사기관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기관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0조(임의수사 우선의 원칙과 강제수사 시 유의사항)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수사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되, 수사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적은 절차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③ 형사사법기관협의회-----

-----.

④ ----- 형사사법기관협의회-----

-----.

⑤ -----
----- 형사사법기관협의회의 -----
--- 형사사법기관협의회에서 ---
--.

제10조(임의수사 우선의 원칙과 강제수사 시 유의사항) ① 사법경찰관-----

-----.

② 사법경찰관-----

를 체포·구속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하고,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신 설>

제11조(회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

제12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대한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

-----.

③ 사법경찰관-----

-----.

④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피) 사법경찰관리-----

-----.

제12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

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은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3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조력)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인 조언·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 등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면담 등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

② ----- 수사기관의 장-----
-----.

제13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조력) ① 사법경찰관-----

-----.

② 사법경찰관-----

-----.

③ ----- 사법경찰관-----

-----.

제14조(변호인의 의견진술) ①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②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의 의견진술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

③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견진술 또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조서에

제14조(변호인의 의견진술) ① --
----- 사
법경찰관-----

-----.

----- 사법경찰관-----

-----.

② -----
----- 사법경찰관-----

-----.
----- 사
법경찰관-----

-----.

③ -----

----- 사법경찰관-----

-----.

④ 사법경찰관-----

적어야 한다.

제15조(피해자 보호) ①·② (생략)

<신 설>

제16조(수사의 개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 3. (생략)

4. 체포·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의 청구 또는 신청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없는 사건의 수사를 개시하거나 수사

-----.

제4조의2(피해자 보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서로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사의 개시) ① 사법경찰관-----

----- 사법경찰관-----

관-----

-----.

1. ~ 3. (현행과 같음)

4. ----- 신청

5. -----

--- 신청

② 사법경찰관-----

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해서는 안 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때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조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피혐의자 및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⑥ (생략)

제16조의2(고소·고발 사건의 수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

----.

③ 사법경찰관-----

④ 사법경찰관-----

⑤ ----- 수사기관
의 장-----.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고소·고발 사건의 수리 등) ① 사법경찰관-----

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제18조(검사의 사건 이송 등) ①

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에 대한 고소·고발·진정 등이 접수된 때에는 사건을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건을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1. 법 제197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게 된 때

2. 그 밖에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해당 수

-----.

② 사법경찰관-----

-----.

<삭 제>

사기관에 함께 송부해야 한다.

④ 검사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이송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송해야 한다.

제19조(출석요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 4. (생략)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의 협의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

제19조(출석요구) ① 사법경찰관-

-----.

1. ~ 4. (현행과 같음)

② 사법경찰관-----

-----.

③ 사법경찰관-----

-----.

요구를 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출석요구서의 사본을,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각각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치료 등 수사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관서 외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다.

⑥ (생략)

제20조(수사상 임의동행 시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행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제21조(심야조사 제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

-----.

④ 사법경찰관-----

⑤ 사법경찰관-----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수사상 임의동행 시의 고지) 사법경찰관-----

제21조(심야조사 제한) ① 사법경찰관-----

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이하 “심야조사”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1.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3. (생략)

4. 그 밖에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은 경우

-----,

-----,

② -----

-----,

-----,

1. -----
----- 신청 -----

2. 3. (현행과 같음)

4. -----

----- 수사
----- 기관의 장-----
----- 사
----- 법경찰관-----

제22조(장시간 조사 제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하 “총조사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2. (생략)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휴식시간 부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에 상당

제22조(장시간 조사 제한) ① 사법경찰관-----

-----.

1. 2. (현행과 같음)

② 사법경찰관-----

-----.

③ 사법경찰관-----

-----.

제23조(휴식시간 부여) ① 사법경찰관-----

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도중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으로부터 휴식시간의 부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때까지 조사에 소요된 시간,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중인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건강상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4조(신뢰관계인의 동석) ① (생략)

②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

② 사법경찰관-----

-----.

③ 사법경찰관-----

-----.

제24조(신뢰관계인의 동석)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사법경찰관-----

은 그 관계를 적은 동석신청서를 제출받거나 조서 또는 수사보고서에 그 관계를 적어야 한다.

제25조(자료·의견의 제출기회 보장)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해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 및 의견을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제26조(수사과정의 기록)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44조의4에 따라 조사(신문, 면담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정의 진행경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기록해야 한다.

--.

제25조(자료·의견의 제출기회 보장) ① 사법경찰관-----

-----.

② 사법경찰관-----

-----.

제26조(수사과정의 기록) ① 사법경찰관-----

-----.

1. · 2. (생략)

② (생략)

<신설>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피의자진술 등의 영상

녹화 및 녹음)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44조의2에 따른 영상녹화

또는 법 제244조의6에 따라 녹

음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도중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시

작하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조

사를 중단하고,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시작한 후 조사를 재개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

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기록하

여야 한다.

1. 피의자에게 영상녹화 또는

녹음사실을 고지한 시각과 방

법

2. 영상녹화 또는 녹음의 시작

및 종료시각

3.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중단

하거나 재개한 경우 그 사유

	<u>와 중단·재개 시각</u> <u>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44조의6에 따라 녹음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기록하여야 한다.</u> <u>1. 법 제244조의6제1항 또는 제2항 중 녹음의 근거가 된 규정</u> <u>2. 법 제244조의6제2항에 따른 녹음의 경우 요청한 사람과 요청 시각</u> <u>④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법 제244조의6제2항에 따른 녹음을 요청할 수 있다.</u>
제27조(긴급체포)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00조의3제2항에 따라 긴급체포 후 12시간 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1. 제51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피의자중지 또는 제52조제	제27조(긴급체포) ① ----- ----- ----- ----- -----. ----- ----- ----- ----- -----. 1. ----- -----

해야 한다.

<신 설>

-----.

제29조의2(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① 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하기 위하여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화상·전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면담을 위해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체포된 피의자의 호송 등 면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의 호송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담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검사는 구속 사유 등 심사에 필요한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피의자 면담 일시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화상, 전화, 서면 등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검사가 법 제201조제8항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할 때에는

	<u>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u>
제32조(체포·구속영장 집행 시의 권리 고지) ①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u> 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에는 법 제200조의5(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32조(체포·구속영장 집행 시의 권리 고지) ① <u>사법경찰관</u> ----- ----- ----- -----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검사와 사법경찰관</u> 이 제1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그 권리를 알려준 경우에는 피의자로부터 권리 고지 확인서를 받아 사건 기록에 편철한다.	③ <u>사법경찰관</u> ----- ----- ----- ----- ----- -----.
제32조의2(체포·구속영장 사본의 교부) ①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u> 은 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에는 법 제200조의6 또는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반	제32조의2(체포·구속영장 사본의 교부) ① <u>사법경찰관</u> ----- ----- ----- ----- ----- -----

드시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거나 영장의 사본을 교부할 때에는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영장의 사본을 교부한 경우에는 피의자로부터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④ 피의자가 영장의 사본을 수령하기를 거부하거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끝 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제33조(체포·구속 등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였을 때에

-----.

② 사법경찰관-----

-----.

③ 사법경찰관-----

-----.

④ -----

-- 사법경찰관-----

-----.

제33조(체포·구속 등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

는 법 제200조의6 또는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7조에 따라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사람 중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사건명, 체포·구속의 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통지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변호인 및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람이 없어서 체포·구속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취지를 수사보고서에 적어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법 제214조의2제2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features ten identical rows of horizontal dashed lines, each consisting of three parallel dashes. These lines are spaced evenly down the page to provide a guide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 The background is white, and there are no other markings or text present.

② 사법경찰관

③ -----

----- 사법경찰관 -----

지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5조(체포·구속영장의 반환)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지 못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해당 영장을 법원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체포·구속영장이 여러 통 발부된 경우에는 모두 반환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체포·구속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사유 등을 적은 영장반환서에 해당 영장을 첨부하여 반환하고, 그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③ (생략)

제36조(피의자의 석방)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00조의2제5항 또는 제200조의4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지 않고(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의 청구를 신청하였으나 검사가 그 신청을 기각한 경

-----.

제35조(체포·구속영장의 반환)

① 사법경찰관-----

-----.

② 사법경찰관-----

-----.

③ (현행과 같음)

제36조(피의자의 석방) ① 사법경찰관-----

----- 신청-----

우를 포함한다) 체포 또는 긴급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해야 한다.

1. · 2. (생략)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생략)

2.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 즉시 검사에게 석방 사실을 보고하고, 그 보고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제38조(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제시·교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18조에 따라 영장을 제시할 때에는 처분을 받는 자에게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 또는 검증이라는 사실과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신체·물건, 압수할 물건 등을 명확히 알리고, 처분을 받는 자가 해당 영장을 열람할 수

-----.

1. · 2.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 통보하고, 그 통보서 ----
-----.

제38조(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제시·교부) ① 사법경찰관-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해당 영장의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② (생략)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거나 영장의 사본을 교부할 때에는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따라 피의자에게 영장의 사본을 교부한 경우에는 피의자로부터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를 받아 사건 기록에 편철한다.

⑤ 피의자가 영장의 사본을 수령하기를 거부하거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끝 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

-----.

② (현행과 같음)

③ 사법경찰관-----

-----.

④ 사법경찰관-----

-----.

⑤ -----

-- 사법경찰관-----

서명해야 한다.

<신 설>

-----.

제38조의2(압수·수색·검증과정의 영상녹화) ①사법경찰관은 법 제220조의2에 따라 압수·수색·검증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녹화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장 제시 및 촬영고지, 영장 사본 교부
2. 압수·수색·검증의 개시 및 진행 과정
3. 압수물의 발견·확인 및 압수과정
4. 압수물의 정리 및 압수목록의 교부 등 압수절차의 완료
5. 압수·수색·검증의 집행종료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는 압수·수색·검증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영상녹화를 중단하거나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중단 및 재개 시각이 영상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영상녹화의 예외사유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된다.

1.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2. 제41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정보저장매체등의 복제본 및 원본을 반출한 뒤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3.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피의자의 도주 등 현장의 급박한 상황으로 즉시 집행이 필요한 경우

4. 증거의 멸실·훼손 또는 은닉 등의 긴급한 사정으로 즉시 집행이 필요한 경우

5. 영상녹화장비의 고장, 통신장애 등 기술적 사유로 영상녹화를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

제40조(압수조서와 압수목록)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했을 때에는 압수의 일시·장소, 압수 경위 등을 적은 압수조서와 압수물건의 품종·수량 등을 적은 압수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검증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적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0조(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사
법경찰관-----

제41조(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 방법) ① 사법경찰관--

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③ (생략)

제42조(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등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삭제·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취득하거나 전자정보를 복제할 때에는 해시값(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한다)을 확인하거나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과정을 촬영하는 등 전자적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無缺性)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 ① 사법경찰관-----

-----.

② 사법경찰관-----

-----.

③ 사법경찰관-----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전 과정에 걸쳐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피압수자등과 변호인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해야 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참여한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이 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사건의 관련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제42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① ~ ④ (생략)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전조치 결과를 보전요청을 한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거나, 긴급보전요청을 하거나 보전요청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이 아닌 검사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보전조치 결과를 통보받

-----.

④ 사법경찰관-----

-----.

⑤ 사법경찰관-----

-----.

제42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보전요청을 신청하거나 긴급보전요청을 한 사법경찰관-----

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보전조치 결과를 보전요청을 한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한 경우: 보전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사법경찰관은 그 내용을 해당 보전요청을 한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2. 보전조치 결과를 긴급보전요청을 하거나 보전요청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이 아닌 검사에게 통보한 경우: 보전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검사는 그 내용을 긴급보전요청을 하거나 보전요청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⑥·⑦ (생략)

제43조(검증조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검증을 한 경우에는 검증의 일시·장소, 검증 경위 등을 적은 검증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 검사는 그 내용을 긴급보전요청을 하거나 보전요청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

<삭 제>

<삭 제>

⑥·⑦ (현행과 같음)

제43조(검증조서) 사법경찰관---

---.

<신 설>

제43조의2(압수물의 처분) ① 사

법경찰관은 법 제218조의2제1
항 및 제4항에 따라 압수물에
대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환부 또는 가환
부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
이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요청할 때에는 그 내용
과 이유를 적은 압수물 처분 의
견 요청서로 해야 한다.

③ 검사는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의
견을 제시해야 하고, 사법경찰
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검사가 제시한 의견과 다르게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적은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로 다시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⑤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검사가 제시한 의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

제45조(시정조치 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② (생략)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법 제197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조치 요구의 통보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④ (생략)

⑤ 검사는 법 제197조의3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송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적으로 서면에 기재하여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법 제219조에 따라 수사 과정에 준용되는 법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압수물의 처분에도 준용한다.

제45조(시정조치 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5일-----

-----.

④ (현행과 같음)

⑤ ----- 사건송치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
-----.

⑥ 사법경찰관은 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사건송치를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해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공소시효 만료일의 임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5항에 따른 서면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별도의 송치기한을 정하여 사법경찰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지받은 송치기한까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제46조(징계요구의 방법 등) ①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법 제197조의3제7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서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이를 증명할

⑥ -----
----- 사건송치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것을 -----
--- 송치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하여야 ---. --- 송부해야 하고,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한다.

⑦ -----

----- 송치 또는 이송기한-----
-----.

----- 기한-----
----- 송치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
-----.

제46조(징계요구의 방법 등) ① 각급 공소청의 장-----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이하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경찰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징계를 요구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7조(구제신청 고지의 확인)
(생략)
<신설>

----- 수
----- 수사기관의 장(이하 “소속 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요구를 통보받은 소속 수사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등 요구 여부를 징계를 요구한 각급 공소청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징계처분등 최종 처리결과와 그 이유도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47조(구제신청의 고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법 제197조의3 제9항에서 정한 고소인등에게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안내 확인서에 상대방의 서명을 받아 사건 기록에 편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우편,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신 설>

<신 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안내하고 그 안내한 일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사건 기록에 첨부할 수 있다.

③ 법 제197조의3제9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고소인등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 안내의 예외 사
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
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사
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1. 고소인등의 인적사항을 특정
하기 어려운 경우

2. 고소인등의 소재가 불명이거
나 부득이한 사유로 고소인등
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경
우

3. 고소인등이 신청 절차의 안
내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
지에 준하는 사유로 안내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고소인등에게
신청 절차를 안내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 절차

제48조(동일한 범죄사실 여부의 판단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4에 따른 수사의 경합과 관련하여 동일한 범죄사실 여부나 영장(「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청구·신청의 시간적 선후관계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한 범위에서 사건 기록의 상호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장 청구·신청의 시간적 선후관계는 검사의 영장청구서와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서가 각각 법원과 검찰청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된다.

제49조(수사경합에 따른 사건송

를 안내해야 한다.

<삭 제>

<삭 제>

치) ① 검사는 법 제197조의4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송치를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해야 한다.

제50조(중복수사의 방지) 검사는 법 제197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사건을 이송하는 등 중복수사를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1조(사법경찰관의 결정)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1. (생략)
2. 검찰송치
3. ~ 5. (생략)

<삭 제>

제51조(사법경찰관의 결정) ① --

-----.

1. (현행과 같음)
2. 공소청송치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제3호나
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건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한다.

1.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
라 벌할 수 없는 경우

2. 기소되어 사실심 계속 중인
사건과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관계에 있거나 「형법」 제40
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 관계
에 있는 경우

④·⑤ (생략)

제52조(검사의 결정)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
치받거나 직접 수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
해야 한다.

1. ~ 11. (생략)

② (생략)

제53조(수사 결과의 통지) ① 검
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51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소인·고
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

② (현행과 같음)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제3호나
목에 해당하는 사건이 사실심
계속 중인 사건과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관계에 있거나 「형
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
합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내
용과 이유를 명시하여 해당 사
건을 검사에게 송치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제52조(검사의 결정) ① -----
----- 송
치받은 -----

-----.

1. ~ 1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3조(수사 및 사건 처분 결과의
통지) ① -----

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인등에게만 통지한다.

1. (생략)

2. 제51조제1항제5호 또는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이송(법제256조에 따른 송치는 제외한다) 결정을 한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해당 피의자에 대해 출석요구 또는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② 고소인등은 법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불송치 통지서로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

1. (현행과 같음)

2. 제5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로서 사법경찰관이 -----

② -----

----- 같은 조에 따른 통지를 해 -----.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6 후단에 따라 불송치 등의 결정서를 보내기에 앞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은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신 설>

보호조치의 범위는 고소인등의 이의신청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2. 통지를 받을 고소인등이 고소·고발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범죄사실과 관계없는 다른 범죄사실 또는 다른 고소인등에 관한 정보

④ -----
----- 법무부장관 또는 수사기관의 장-----
-----.

제53조의2(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245조의6 후단에 따라 고소인등에게 송부하는 불송치 등의 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사건관계인의 법률적·사실적 주장에 대한 판단 근거 등 불송치의 취지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5조의7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해당 범죄행위의 상대방이 고발한 「형법」 제2편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제128조(선거방해)의 죄, 「형법」 제2편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중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37조(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144조(특수공무방해)의 죄

2.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고발한 「형법」 제2편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제123조의2(법왜곡), 제126조(피의사실공표),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의 죄, 「형법」 제2편 제11장 무고의 죄

3.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고발한 「형법」 제2편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중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제154조

	<u>(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의 죄</u> 4. <u>해당 문서 등의 명의자, 해당 문서 등이 제출된 소송의 당사자 또는 해당 문서 등의 행사 행위의 상대방이 고발한 형법 제2편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u> 5. <u>그 밖에 국가적 또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고발인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범죄</u>
제54조(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등) ① 제53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u>상급경찰관</u>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절차·방법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u>이 정한다. ③·④ (생략)	제54조(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등) ① ----- ----- ----- ----- ----- <u>상급 수사관</u>----- -----. ② ----- ----- ----- <u>수사기관의 장</u>----- -----.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5조(소재수사에 관한 협력 등)

- ① (생략)
- ② 검사는 법 제245조의5제1호 또는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의자나 참고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에게 소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이에 협력해야 한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2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라 수사중지 또는 기소중지·참고인중지된 사건의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발견하는 등 수사중지 결정 또는 기소중지·참고인중지 결정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은 법 제245조의11에 따른 이의
제기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55조(소재확인에 관한 협력 등)

- ① (현행과 같음)
- ② ----- 법 제245조의5제1항
제1호 또는 법 제245조의7제4항

- 사건을 송치한 수
사관서의 사법경찰관에게 소재
확인을 -----

-----.
- ③ 제51조제1항제4호 -----

- 검사는 사건을 재기하여야 하
고, 사법경찰관은 즉시 수사를
진행하여야 ---.

제57조(송치사건 관련 자료 제공)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의 공소장, 불기소결정서, 송치결정서 및 법원의 판결문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사법경찰관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제58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① 사법경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송치의 이유와 범위를 적은 송치 결정서와 압수물 총 목록, 기록목록,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등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한 경우에는 해당 영상녹화물을 봉인한 후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때 봉인된 영상녹화물의 종류와 개수를 표시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해야 한다.

③ (생략)

제59조(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

제57조(송치사건 관련 자료 제공)

-- 판결서를 -----

-----.

제58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① -----

----- 범위, 장기 및 단기 공소시효 만료일을
---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
-----.

② -----
----- 영상녹화 또는 녹음한 -- 영상녹화물 또는 녹음물 -----
----- 영상녹화물 또는 녹음물의 -----
-----.

③ (현행과 같음)

제59조(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

위)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사건을 수리한 날(이미 보완수사요구가 있었던 사건의 경우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
2. 사건이 송치된 이후 검사가 해당 피의자 및 피의사실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보완수사를 한 경우
3. 법 제197조의3제5항, 제197조의4제1항 또는 제198조의2제2

위) <삭 제>

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4.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사건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수집의 대상 및 법령의 적용 등에 대해 협의를 마치고 송치한 경우

② 검사는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보완수사의 정도, 수사 진행 기간, 구체적인 사건의 성격에 따른 수사 주체의 적합성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존중과 협력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③ 검사는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송치사건 및 관련사건(법 제11조에 따른 관련사건 및 법 제208조제2항에 따라 간주되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한 사건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호의 경우에는 수사기록에 명백히 현출(現出)되어 있는 사건으로 한정한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삭 제>

③ -----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

사항에 관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 6. (생략)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19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7. 그 밖에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

-----.

1. ~ 6. (현행과 같음)

④ -----

-----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 제8조에 따른 잠정조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8조의3에 따른 임시조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 그 밖의 법령에서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각종 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 ---.

1. ~ 6. (현행과 같음)

7. -----
----- 여부 결정에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신 설>

제60조(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 ①·② (생략)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 제2항에 따라 보완수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 결과를 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그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반환해야 한다. 다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보완수사의 이행 결과

관하여 -----

⑤ 검사는 제4항에 따라 영장을 청구하면서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0조(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법 제197조의2제6항에 따른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만을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 설>

⑤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보완수사를 이행한 결과 법 제245조의5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수사중지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⑤ 사법경찰관이 제4항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보완수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의 사유와 필요한 연장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

----- 법 제197조의2제5항에
따른 검사의 의견 제시 절차를
거친 다음 제51조제1항제3호--
----- 수사중지한다.

⑦ 사법경찰관이 법 제197조의2 제4항에 따라 검사에게 이행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종합수사 결과를 포함한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고,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종합수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피의자 인적사항

<신 설>

2.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자료
3. 기존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
4. 기존 수사결과와 증거관계
5. 보완수사의 진행 내용
6. 보완수사에 따라 범죄사실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
7. 보완수사에 따라 혐의 여부에
대한 판단 등 수사결과가 변
경된 경우 그 취지와 이유
8. 보완수사결과와 증거관계

제60조의2(보완수사요구 이행 기
간의 관리) ① 검사는 사법경찰
관의 보완수사 기간(제60조제4
항에 따라 보완수사 기간이 연
장된 경우 연장된 기간을 말한
다)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사법경찰관에게 고지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경우 보완수사 이
행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사
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제2항

<신 설>

에 따른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수사 기간 내에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④ 제60조의3제5항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보완수사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제60조의3(이행 결과 통보 전 절차)

①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려는 경우 미리 제60조제7항의 종합수사 결과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제1항의 송부를 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송부가 있는 경우에 보완수사요구 이행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견을 제시하고 법 제197조의2 제6항에 따른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검사가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 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제4항에 따라 검사가 의견을 제시한 날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검사가 제3항에 따라 추가적인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⑦ 사법경찰관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검사는 위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사법경찰관에게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61조(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

제61조(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

의 방법과 절차) ①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법 제197조의2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직무배제 요구를 통보받은 경찰관서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③ 경찰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의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의 방법과 절차) ① 각급 공소청의 장은 법 제197조의2제7항

-- 권한 있는 사람-----

-----.

② -----

----- 권한 있는 사람-----

----- 없는 한 -----

----- 배제하고, 1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직무배제를 요구한 각급 공소청

의 장에게 통보해야 ---.

③ 제1항의 징계 요구를 통보받은 권한 있는 사람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의

결등 요구 여부를 징계를 요구

한 각급 공소청의 장에게 통보

해야 하고, 징계처분등 최종 처

리결과와 그 이유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신 설>

제3절 사건불송치와 재수사요청

제62조(사법경찰관의 사건불송치)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5 제2호 및 이 영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불송치의 이유를 적은 불송치 결정서와 함께 압수물 총 목록, 기록목록 등 관계 서류와

제61조의2(상급 수사관서 등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의 절차) ①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법 제197조의2제8항에 따라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해당 수사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제1항의 보완수사요구에 앞서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나 그 상급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의 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절 사건불송치와 재수사요구

제62조(사법경찰관의 사건불송치)

① ----- 법 제245조의5 제1항제2호 -----

---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영상녹화물의 송부 및 새로운 증거물 등의 추가 송부에 관하여는 제5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63조(재수사요청의 절차 등)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8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45조의5 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재수사

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 -----

---.

② ----- 영상녹화물 또는 녹음물의 송부 -----
-----.

제63조(재수사요구의 절차) 검사

는 법 제245조의8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해당 사건에 관하여 영향을 주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증거 등의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3. 법 제245조의5 제2항에도 불

를 요청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③ 검사는 법 제245조의8에 따라 재수사를 요청한 경우 그 사실을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수사의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한다.

제64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8제2항에 따라 재수사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45조의5제1호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
2.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 재수사 결과서에

구하고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이 송부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된 경우

4. 해당 사건의 수사에 관여한 사람이 직무에 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5. 해당 사건의 수사에 관여한 사람에게 제11조의 회피 사유가 있었음이 확인된 경우

제64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① -
----- 법 제245조의8제4
항-----

---.

1. -----
----- 법 제245조의5제1항
제1호-----

2.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 재수사로 수집한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통보

<신 설>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수사 결과를 통
보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수
사를 요청하거나 송치 요구를
할 수 없다. 다만, 검사는 사법
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
아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할 필
요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는 법 제197조의3에 따라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생 략)
2. 범죄 혐의의 유무를 명확히

증거와 법리, 그에 대한 종합
적 판단 등 불송치 결정을 유
지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이유
를 적은 재수사결과서를 검사
에게 통보하고,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

② 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필요한 경우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
우 사법경찰관의 재수사 기간
및 결과 통보 등은 제1항에 따
른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위법 또는 부당
이 시정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197조의3에 따라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헌행과 같음)
2. -----

하기 위해 재수사를 요청한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만, 불송치 결정의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3. 4. (생략)

③ 검사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건송치 요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이에 협력해야 한다.

④ 검사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송부를 요청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건송치 요구를 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사건송치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

요구한

3. 4. (현행과 같음)

<삭제>

④ ----- 제1항제2호 -----
----- 서류 및 -----
-----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
제3항 -----

야 한다.

<신 설>

-----.

제64조의2(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방법과 절차) ① 각급 공소청의 장은 법 제245조의8제8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수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의 직무배제 요구를 통보받은 소속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1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직무배제를 요구한 각급 공소청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징계요구를 통보받은 소속 수사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등 요구 여부를 징계를 요구한 각급 공소청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징계처분등 최종 처리결과와 그 이유

<신 설>

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64조의3(상급 수사관서등에 대한 재수사요구의 절차) ① 각급 공소청의 장이 법 제245조의8제9항에 따라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재수사를 요구할 때에는 법 제245조의5제2항에 따른 자료,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해당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으로 송부한다.

② 각급 공소청의 장은 제1항의 재수사요구에 앞서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나 그 상급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재수사요구가 있는 경우 각급 공소청의 장은 사건을 송부하였던 수사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수사관서의 장은 재수사요구를 받은 기관으로 해당 사건을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제65조(재수사 중의 이의신청) 사
 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8제2
 항에 따라 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
 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수사를 중단해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65조(재수사 중의 이의신청) --
 ----- 제245조의8-----

 ----- 제245조의7제1항 또는
 제2항-----
 ----- 같은
 조 제4항-----

 -----.

제4절 검사의 수사요청 및
 사실관계 확인

제65조의2(검사의 수사요청 등)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9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수사요청
 을 수리하고 입건 여부를 검토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의 수사요청을 수리한 날부
 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
 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
 치할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
 과를 지체 없이 검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
 245조의9제2항에 따라 검사에

<신 설>

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와 관련
된 범죄 혐의를 통보받은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제3항
에 따라 통보받아 수리한 날부
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
월 이내에 범죄의 혐의를 조사
한 후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65조의3(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검사의 의견 청취 절차) ① 검
사는 법 제245조의13제1항(법
제197조의3 제3항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
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피의
자, 사건관계인, 전문가에게 출
석을 요구하거나, 화상·전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② 검사는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
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6조(재정신청 접수에 따른 절차) ①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 법 제260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속 검사는 즉시 사법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68조(사건 통지 시 주의사항 등)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2조에 따라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거나 제53조에 따라 수사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③ 공소청 소속 직원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④ 법 제245조의13제5항에 따라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66조(재정신청 접수에 따른 절차) ①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 법 제260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소속 검사는 즉시 사법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8조(사건 통지 시 주의사항 등) ----- 제12조 또는 제53조에 따라 통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범죄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
 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
 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
 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
 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
 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
 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형사법제과	
연 락 처	(02)